

영국 노딜-브렉시트 발생시 시험·인증분야 대비 안내

영국의 『노딜-브렉시트』 발생 관련 업계의 대비를 위한 안내 가이드를 갱신 배포함 ('19. 07)

- ◇ 본 안내서는 영국 정부(<https://www.gov.uk>)가 「노딜 브렉시트」를 대비하여 지난 3월 발표한 주요 가이드언스가 업데이트 되어 그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적합성평가분야(시험·인증 등)에 있어 영국과 EU 제품 수출시 주의 사항 및 변경 사항을 안내하기 위하여 작성됨.

* 노딜 브렉시트 (No Deal Brexit) : 영국이 유럽연합(EU)과 아무런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EU를 탈퇴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영국과 EU와 합의한 전환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영국은 EU 회원국 혜택 비적용 전환

- ◇ 노딜 브렉시트관련 업데이트 내용을 영국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어, 본 안내서의 내용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자료는 현재까지 공표('19.7월)된 내용에 대한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 현재, 최초 영국 정부의 브렉시트 합의안이 영국 의회에서 부결되면서 브렉시트 시한은 '19.10.31일로 연기된 상태이며 기존 합의안을 철회하고 새로운 합의안을 제시할 예정임에 따라 신규 합의안에 따른 정부 가이드언스 변경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됨.

문의처

1381 콜센터 (☎ 1381),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02-860-1330)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02-2164-0036) 또는 관련 협·단체

1 개요

● 목적

-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이후의 규정과 표준」에 대한 가이드언스를 발표하여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EU시장에 제품 판매시 변경되는 주요내용을 안내하고 있음
- 본 문건은 세관 요구사항은 다루지 않고 있으므로 관련된 정보는 별도 가이드언스 확인 필요

● 출처 : 영국 정부 사업에너지 산업정책부 가이드언스

(영문) Regulations and standards after Brexit

(국문) 브렉시트 이후의 규정과 표준

(담당 부처명)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

(웹주소) <https://www.gov.uk/guidance/regulations-and-standards-after-brexit>

2 노딜 브렉시트인 경우의 상품규제 방식

- 영국이 브렉시트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경우, 영국 정부는 노딜 브렉시트 이후 당분간 현행 제도 연속성을 유지하기로 결정함. 즉, 대부분의 경우 제조된 상품을 영국 시장에 판매하기 위한 규제 요건은 현재와 크게 변화가 없을 것임
- EU 규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제품은 노딜 이후에도 정해진 유예 기간 동안은 영국 시장에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것임
- 일부 분야(예: 화학, 자동차 및 의약품 등)에서는 영국의 새로운 절차가 도입될 것임. 이 경우 영국의 신규 승인 절차는 EU 탈퇴 시점의 EU승인을 영국의 승인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여 수립될 것임

3 EU 시장에서의 제품 판매

- 영국이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경우, 상품을 EU에 판매하기 위해 영국에서 규제 준수 활동을 수행한 경우는 EU에서 유효한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임
- 이는 영국 제조업체들이 EU시장에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중단해야 하는 것을 의미 하지는 않으며 EU에 판매하는 영국 제조업체들은 EU규정 요구사항을 계속 충족하는 한 지속적으로 판매할 수 있음.

④ 관련된 영국정부의 가이드스

UK 가이드스 제목 (원문/국문) 및 웹사이트

◎ 제품 출시 일반

- Placing manufactured goods on the UK market if there's no Brexit deal (노딜 브렉시트 발생시, 영국 시장에 제조 상품 출시)
<https://www.gov.uk/guidance/placing-manufactured-goods-on-the-uk-market-if-theres-no-brexit-deal>
- Placing manufactured goods on the EU internal market if there's no Brexit deal (노딜 브렉시트 발생시, 유럽 시장에 제조 상품 출시)

<https://www.gov.uk/guidance/placing-manufactured-goods-on-the-eu-internal-market-if-theres-no-deal>

◎ 의료기기

- Batch testing medicines if there's no Brexit deal(노딜 브렉시트 발생시, 의료 기기 배치 테스트)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batch-testing-medicines-if-theres-no-brexit-deal/batch-testing-medicines-if-theres-no-brexit-deal>
- Further guidance note on the regulation of medicines, medical devices and clinical trials if there's no Brexit deal (노딜 브렉시트 발생시 의약품, 의료기기 및 임상실험의 규정에 관한 추가 가이드스)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further-guidance-note-on-the-regulation-of-medicines-medical-devices-and-clinical-trials-if-theres-no-brexit-deal>

◎ 자동차 분야

- Vehicle type approval if there's no Brexit deal (노딜 브렉시트 발생 시, 자동차 형식 승인)
<https://www.gov.uk/guidance/vehicle-type-approval-if-theres-no-brexit-deal>

◎ 우주 항공 분야

- Prepare to work and operate in the European aviation sector after Brexit (브렉시트 이후의 유럽 항공분야 운영 준비)
<https://www.gov.uk/guidance/prepare-to-work-and-operate-in-the-european-aviation-sector-after-brexit>

◎ 화학분야

- How to comply with REACH chemical regulations (REACH 화학물질 규제 준수 방법)
<https://www.gov.uk/guidance/how-to-comply-with-reach-chemical-regulations>

◎ 제품안전 분야 관련 법령 변경

- UK Product safety and metrology guidance in a no deal scenario (노딜인 경우 영국 제품안전과 계량 안내서)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uk-product-safety-and-metrology-guidance-in-a-no-deal-scenario>

2 노딜 브렉시트 발생시, 영국 시장에 제조 상품 출시

1 개요

● 목적

- 영국 정부는 「노딜 브렉시트 발생시, 영국 시장에 제조 상품 출시」에 대한 가이드를 발표하여 관련 주요내용을 안내하고자함
- 본 공지는 영국에 상품을 출시하는 것에 한하며 EU에 상품을 출시하는 것은 별도의 가이드가 적용됨

● 출처 : 영국 정부 사업에너지 산업정책부 가이드

(영문) Placing manufactured goods on the UK market if there's no Brexit deal

(국문) 노딜 브렉시트 발생 시, 영국 시장에 제조 상품 출시

(발표한 부처명)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

(웹주소) <https://www.gov.uk/guidance/placing-manufactured-goods-on-the-uk-market-if-there-is-no-brexit-deal#non-harmonised-goods>

2 적용 범위

● 신접근 지침 대상 품목 (New approach goods) 주요 변경사항

구분	내용
필수 요구사항	현재 유럽에서 적용하고 있는 제품 법적 필수 요구사항은 영국에서도 그대로 적용
적합성 평가	승강기 등 일부 품목은 공인기관을 통한 적합성 평가 필요 완구 등의 품목은 제조자 자가적합선언 가능
CE 마크 사용	제조자, 수입자, 판매자는 EU 규정을 만족한 경우 노딜 이후라도 CE마크 부착한 제품을 영국 시장에 판매 가능 ▶ EU 공인기관 인증이나 제조자 자가적합선언 모두에 적용 ▶ 다만, 일정 기간 동안만 인정될 것임. 정부에서 추후 고지 예정
신규 영국 제도	신규 UKCA 마크 도입 예정 ▶ 현재 영국의 CE인증 공인기관(NB)가 UKCA 승인기관으로 전환 ▶ UKCA마크 부착 제품은 영국만 출시 가능, EU시장 출시 불가 ▶ 일정 기간 동안, CE 나 UKCA마크 부착제품 둘 다 영국 출시 가능
표준	현재 EU의 조화표준 (Harmonized Standards)은 영국 지정표준(Designated standards)으로 전환 단, 규격의 내용은 현재대로 유지

● 신접근 지침 대상 품목 리스트

- Accreditation and Market Surveillance - (Regulation (EC) No 765/2008)
- Toy Safety (Directive 2009/48/EU)
-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Directive 2011/65/EU)
- Pyrotechnic Articles (Directive 2013/29/EU)
- Recreational craft and personal watercraft (Directive 2013/53/EU)
- Civil Explosives (Directive 2014/28/EU)
- Simple Pressure Vessels (Directive 2014/29/EU)
-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Directive 2014/30/EU)
- Non-automatic Weighing Instruments (Directive 2014/31/EU)
- Measuring Instruments (Directive 2014/32/EU)
- Lifts (Directive 2014/33/EU)
- ATEX (Directive 2014/34/EU)
- Radio equipment (Directive 2014/53/EU)
- Low Voltage (Directive 2014/35/EU)
- Pressure equipment (Directive 2014/68/EU)
- Marine Equipment (Directive 2014/90/EU)
-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Regulation (EU) 2016/425)
- Gas appliances (Regulation (EU) 2016/426)
- Machinery Directive (Directive 2006/42/EC)
- Noise emission in the environment by equipment for use outdoors (Directive 2000/14/EC)
- Ecodesign (Directive 2009/125/EC)
- Published 19 March 2019

● 구접근 지침 대상 품목 (Old approach goods)

- 영국 시장에 제품출시를 위해 영국의 요건이 별도로 적용됨
- 따라서 각 지침별로 영국의 규제를 확인해야 함

분야	관련 영국 가이드스명
화학제품	정부기관 HSE의 No-deal guidance https://www.hse.gov.uk/brexit/brexit-no-deal-guidance.htm
의료기기	Register to make submissions to the MHRA in a no deal Brexit
자동차	정부기관 VCA의 가이드스 https://www.vehicle-certification-agency.gov.uk///brexit/brexit.asp
우주 항공	정부기관 CAA의 가이드스 https://info.caa.co.uk/brexit/

● 비조화 품목 (Non-harmonized goods)

- 비조화 품목은 EU에서 상호인정의 원칙을 적용받아 EU 회원국에서 합법적으로 판매시 타회원국에서도 판매 가능하도록 하였음
- 브렉시트 이후 비조화 품목이 영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EU 규제와 무관한 영국 자체 규정이 충족되는지 확인하여야 함

③ EU 역외국가에서 제품 수입

- EU 역외국가에서 제품이 영국으로 수입될 시 아래 2가지 방법을 통해 진출 가능

1	영국 승인기관의 제품 평가 후 출시
2	EU 및 EEA 국가 공인기관을 통해 승인받아 EU 역내에 유통중인 제품 (단, 제한된 기간만 가능)
3	EU와 상호인정협정을 맺은 아래 국가에서 EU 요건에 따라 제품 적합성 평가를 수행한 경우 (단, 제한된 기간만 가능) -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일본, 스위스, 터키, 한국, 이스라엘

④ 연락처

- 추가 문의는 goodsregulation@beis.gov.uk 를 통해 문의

⑤ 관련 법령

- 브렉시트에 따라 제품 안전에 관한 아래 법령 변경이 진행중임

- Product Safety and Metrology etc. (Amendment etc.) (EU Exit) Regulation 2019

3 노딜 브렉시트 발생시, EU 시장에 제조 상품 출시

1 개요

● 목적

- 영국 정부는 「노딜 브렉시트 발생시, EU 시장에 제조 상품 출시」에 대한 가이드를 발표하여 관련 주요내용을 안내하고자함
- 본 공지는 EU에 상품을 출시하는 것에 한하며 영국에 상품을 출시하는 것은 별도의 가이드가 적용됨

● 출처 : 영국 정부 사업에너지 산업정책부 가이드

(영문) Placing manufactured goods on the EU internal market if there's no Brexit deal

(국문) 노딜 브렉시트 발생 시, EU 역내 시장에 제조 상품 출시

(발표한 부처명)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

(웹주소) <https://www.gov.uk/guidance/placing-manufactured-goods-on-the-eu-internal-market-if-theres-no-deal>

2 적용 범위

● 신접근 지침 대상 품목 (New approach goods) 주요 변경사항

구분	내용
필수 요구사항	현재 EU에서 적용하고 있는 필수 요구사항은 변경 없음
적합성 평가	제품 필수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평가가 수행되어야 함 승강기 등 일부 품목은 공인기관을 통한 적합성 평가 필요 완구 등의 품목은 제조자 자가적합선언 가능
공인기관의 적합성 평가가 필요한 제품	제조자, 수입자, 판매자는 EU 규정을 만족한 경우 노딜 이후라도 CE마크 부착한 제품을 영국 시장에 판매 가능 ▶ EU 공인기관 인증이나 제조자 자가적합선언 모두에 적용 ▶ 다만, 일정 기간 동안만 인정될 것임. 정부에서 추후 고지 예정
자가 적합 선언	자가 적합 제품은 스스로 CE마크를 부착하여 EU 역내 시장에 배치가 가능함

● 비조화 품목 (Non-harmonized goods)

- 비조화 품목은 영국 탈퇴 후에는 EU 상호인정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신규 출시 할 때 EU 수출국가의 국가 규정을 확인하여 준수해야 함

- 제품이 최초 출시되는 국가의 규정을 만족하는 경우 타 EU 국가로 판매 가능
- 탈퇴 전에 EU 시장에 이미 출시되어 있는 제품은 별도 조치 불필요함
- 국가별 규정은 EU 국가의 product contact point를 통해 확인 가능함

※ EU Product contact point 링크 :

<http://ec.europa.eu/growth/single-market/goods/free-movement-sectors/mutual-recognition/contacts-list/>

● 구접근 지침 대상 품목 (Old approach goods)

- EU 시장에 제품출시를 위해 별도로 적용되며 노딜 이후 각 지침별 EU 집행위원회에서 발행한 가이드스 문서를 확인하여 적용해야 함

분야	관련 EU 가이드스명
화학제품	European Commission preparedness notice on chemicals regulation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chemicals-regulation-under-reach_en.pdf
의료기기	European Commission preparedness notice on medicines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medicinal_products_for_human_use-veterinary_medicinal_products_en.pdf European Commission Q&A on medicines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file_import/medicinal_products_for_human_and_veterinary_use-ga_en_0.pdf
자동차	European Commission preparedness notice on type approvals (automotive vehicles)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file_import/type_approvals-automotive_vehicles_en.pdf European Commission preparedness notice on type approvals (vehicles and engines)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file_import/type_approval-vehicles_and_engines_en.pdf European Commission Q&A on type approvals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type-approval-motor-vehicles-certain-other-vehicles-engines-questions-answers_en.pdf
우주 항공	European Commission Q&A on type approvals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file_import/aviation_safety_en.pdf

④ 연락처

- 추가 문의는 goodsregulation@beis.gov.uk 를 통해 문의

1 개요

● 목적

- 영국정부는 노딜 브렉시트 발생 시, 현재 EU 규정에 적용을 받는 의료기기 및 건축 제품의 규제 변경 사항에 대한 가이드언스 발표하여 관련 주요내용을 안내하고 자함

● 출처 : 영국 정부 관련부처 가이드언스

<의료기기 분야>

(영문) Further guidance note on the regulation of medicines, medical devices and clinical trials if there's no Brexit deal

(국문) 노딜 브렉시트 발생 시, 의약품, 의료기기 및 임상시험 규제 방법

(발표한 부처명) Medicines and Healthcare products Regulatory Agency

(웹주소)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further-guidance-note-on-the-regulation-of-medicines-medical-devices-and-clinical-trials-if-theres-no-brexit-deal>

<건설제품 분야>

(영문) Construction Products Regulation if there is no Brexit deal

(국문) 노딜 브렉시트 발생 시, 건설 제품 규제

(발표한 부처명) Ministry of Housing, Communities & Local Government

(웹주소) <https://www.gov.uk/guidance/construction-products-regulation-if-there-is-no-brexit-deal>

2 노딜 브렉시트 발생시 주요 변경사항

- ※ 영국 정부가 발표한 가이드언스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였으므로 상세한 내용은 관련 가이드언스 참고가 필요

● 의료기기

○ 영국 및 EU 수출시 변경사항 및 주의사항

노딜 전	노딜 후
의료기기는 현재 유럽 CE인증 대상으로 아래 EU 법규의 적용 받으며 EU 공인기관인 NB로부터 적합성 평가 인증 (CE마크)을 받아야 함 - 능동 의료 이식 기기 (EU AIMDD) - 의료 기기 (EU MDD) - 체외 진단형 기기 (EU IVDR)	EU 법규인 EU AIMDD, EU MDD, EU IVDR은 영국에서도 그대로 적용, 다만 영국법령으로 전환하기 위해 [의료기기 수정 EU 탈퇴 규정 2019] 법규를 신설하여 의료기기에 적용

- 의료 기기 규정 (EU MDR) - 체외진단 의료기기 규정 (EU IVDR) 영국의 공인기관(Notified Body)은 EU 적합성 평가기관으로서 CE인증 발행 및 EU에서 인정됨	노딜 이전에 영국 공인기관에서 발급받은 CE 인증은 노딜 이후에도 영국에서는 계속 유효함 노딜 이후에 새로운 제품을 영국이나 EU에 출시할 경우 EU 기반 공인기관을 통하여 CE마크를 취득해 해당 제품에 표시한 후 영국 또는 EU에 배치 가능함 영국 기반의 공인 기관은 노딜 시 더 이상 EU에서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영국 공인기관에서 받은 인증서는 더 이상 EU에서 유효하지 않음 탈퇴 이후부터 영국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의료기기, 능동이식형 의료기기, IVD는 MHRA에 등록되어야 하며 제품별로 등록 만료 기간이 정해짐. 이 기간내에 등록하지 않은 제품은 영국 시장에 출시할 수 없음 - Class III 등 높은 위해도 (4개월) - Class II 등 중간 위해도 (8개월) - Class I 등 낮은 위해도 (12개월) 탈퇴 이전에 MHRA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은 관련 정보의 정확성 확인을 위해 MHRA에 정보 업데이트를 해주어야 함
---	--

● 건설제품

○ 영국 수출시 변경사항 및 주의사항

노딜 전	노딜 후
동일 기술표준, 규정 사용 및 CE 마크 사용 ① 기존조화 표준에 부합하는 제품 ▶ 제품의 성능 선언이 필요하고 'CE' 표시 부착 ▶ 또한 신뢰성 보장을 위한 성과연속성 평가와 검증 (AVCP)을 제공 ▶ 성능에 대한 제3자 평가가 요구되는 경우 평가는 Notified Body(NB) 에서만 수행 가능하며 인증기관 4자리 식별 번호가 제품에 부착되어 있어야 함 ▶ 해당 NB 는 EU의 NANDO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음. ② 조화 표준에 일부 부합하는 제품 ▶ 유럽 평가문서에 기반하여 기술평가가 필요함. ▶ EOTA(유럽기술평가기구)로 알려진 기술평가기관(TAB)에서 평가후 CE마크 부착 가능 ▶ 이러한 기술평가 기관 역시 EU의 NANDO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음	기존의 모든 유럽 조화 표준은 영국의 지정 표준이 될 것임. 즉, 노딜 이후라도 영국과 EU의 표준은 동일함 ① 노딜 브렉시트 이전에 영국 시장에 들어와 있는 CE마크 부착 제품 ▶ 영국 내 계속 유통 가능 ② EU 조화 표준에 따라 제조 및 평가되고, CE 마크가 부착된 제품 ▶ 노딜 이후에도 영국 시장 판매 가능 ▶ 일정 기간까지만 유효할 것이며, 기간 만기 전 기업에 충분한 공지 예정 ▶ 다음의 요건이 필수 사항임: - CE 마크 부착 - 제조자 성능 선언서(manufacture's declaration of performance) - 제3자 평가가 요구되는 경우, EU 인정 기관에 의한 적합성 평가 수행 ③ 영국 공인기관의 UK marking 제품은 노딜 이후에도 판매 가능함 ④ 공인기관의 인증이 필요 없이 마크만 부착하는 제품은 일정 기간 동안 UK마크 또는 CE마크 선택 가능 (단, CE마크 부착시만 EU 수출 가능)

○ EU로 수출시 변경사항 및 주의사항

노딜 전	노딜 후
동일 기술규정 사용 및 CE 마크 사용	노딜 후 영국 공인 기관은 EU 공인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며 따라서 영국 기관은 탈퇴일부터 EU법률에 따른 적합성 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권고: 철회 날짜 이전에 영국 공인 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EU 27개 국 인증기관으로 인증서를 양도하거나 새 인증서를 신청, 이 경우 공인기관의 식별번호가 변경되므로 새로운 EU 공인기관의 식별번호 4자리를 제품에 등록해야 함

5 노딜 브렉시트 발생시, 차량 규제요건(old approach) 변경사항

1 개요

● 목적

- 영국 정부는 「노딜 브렉시트 발생시, 차량 규제요건(old approach) 변경사항」에 대한 가이드언스를 발표하여 관련 주요내용을 안내하고자함

● 출처 : 영국 정부 교통부, 차량인증국, 운전자 및 차량표준국 가이드언스

(영문) Vehicle type approval if there's no Brexit deal

(국문) 노딜 브렉시트 발생 시, 차량 형식 승인

(발표한 부처명) Department for Transport, Vehicle Certification Agency, Driver and Vehicle Standards Agency

(웹주소) <https://www.gov.uk/guidance/vehicle-type-approval-if-theres-no-brexit-deal>

(2019년2월25일 발표 버전)

2 차량 및 부품 형식 승인

※ 영국 정부가 발표한 가이드언스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였으므로 상세한 내용은 관련 가이드언스 참고가 필요

- 차량 및 부품 제조업체는 판매용 제품을 시장 출시하기 전에 안전 및 환경 표준을 준수함을 입증해야 하며 이런 프로세스를 형식승인이라고 함
- EU에서 차량을 판매 등록하려면 제조업체는 EU 국가의 형식승인 기관에서 발급한 유럽 공동체 형식 승인인 EC Type approval을 보유 해야함. 일부 부품 역시 형식 승인 대상임
- 현재 이러한 표준은 유럽 공동체 전 차량 형식승인 (ECWVTA- European Community Whole Vehicle Type Approval) 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음
- 영국의 공인 차량 기술서비스 기관은 **VCA (Vehicle Certification Agency)** 임

[표. EC 차량 형식승인 대상범주 및 엔진]

1. 승객용 차량

- 승용차 (M1)
- 미니버스 (M2)
- 버스 및 코치(coaches) (M3)

2. 화물 자동차

- 경자동차, 차량 파생 밴 (N1)
- 최대 12톤의 화물 차량 (N2)
- 12톤 이상의 화물 차량 (N3)

3. 도로 차량용 트레일러

- 경량 트레일러 (O1)
- 최대 3.5톤 트레일러 (O2)
- 최대 10톤 트레일러 (O3)
- 10톤 이상의 트레일러 (O4)

4. 오토바이

- 모터사이클 및 동력 사이클 (L1)
- 3륜 오토바이 (L2)
- 오토바이 (L3)
- 사이드카가 달린 오토바이 (L4)
- 전원식 삼륜차 (L5)
- 경량 사륜차 (L6)
- 중량 사륜차 (L7)

5. 농업 및 임업용 차량

- 바퀴달린 트랙터 (T)
- 궤도식 트랙터 (C)

6. 비포장 도로용 엔진

- 소형원예 및 휴대용 장비 (잔디 깎기, 전기 톱, 등)
- 건설기계 (굴삭기, 로더, 불도저 등)
- 농업 및 농업기계 (수확기, 경운기 등)
- 철도 차량, 기관차 및 내륙 수로

③ 노딜 브렉시트 발생시 주요 변경사항

● 영국 수출시 변경사항 및 주의사항

노딜 전	노딜 후
EC 단일 차량 형식승인 적용 UN-ECE 승인을 인정함	노딜영국 국외에서 발행된 EC 자동차 형식 승인은 영국에서 자동으로 승인되지 않으므로 EC 형식승인 취득 제품은 다음을 이행해야 함

노딜 전	노딜 후
	① 기존 승인 받은 차량 또는 부품 ▶ 영국 시장에 제품을 계속 판매하기 위해서는 영국 형식 승인으로 변환 필요. (변환 절차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이후 제공될 예정) 기술 표준은 EU와 일치함 ▶ 기존에 EC 형식 승인을 받은 차량(부품)은 임시 영국 형식 승인 (Provisional type approval)을 발행하여 EC형식승인을 영국 형식승인으로 행정변경토록 함 ▶ 임시 형식 승인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2년이며 이 기간 동안 제조자는 EC 형식 승인을 영국 형식 승인으로 완전히 전환해야 함. 전환업무는 VCA에서 가능하며 2019년 중에 상세전환 안내 배포 예정 ▶ 영국은 유엔경제사회위원회(UN-ECE)의 시스템과 부품에 대한 승인은 계속 인정함 ▶ VCA가 임시 형식승인을 영국 형식승인(UK type approval)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2019년내 법안 도입 ② 신규 차량 및 부품 승인 ▶ 신규 차량 판매시 제조자는 영국 형식 승인 제도에 따른 UK type approval 취득이 필요함

● EU로 수출시 변경사항 및 주의사항

노딜 전	노딜 후
EC 단일 차량 형식승인 적용	▶ 영국에서 발행된 형식 승인은 EU 시장에서 판매나 등록을 위해 인정되지 않음. ▶ 영국 VCA에서 발급한 EC 형식 승인을 보유한 기업은 EU 국가의 승인 기관으로부터 새로운 EC 형식 승인을 받아야 함 (EU Regulation 2019/26 참고) ▶ VCA는 EU형식승인을 위한 기술서비스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음

1 개요

● 목적

- 영국 정부는 「노딜 브렉시트 발생시, 화학물질(old approach) 변경사항」에 대한 가이드언스를 발표하여 관련 주요내용을 안내하고자함

● 출처 : 영국 정부 환경식품농림부 가이드언스

(영문) How to comply with REACH chemical regulations

(국문) 노딜 브렉시트 발생 시, 화학물질(REACH) 규정을 준수하는 방법

(발표한 부처명)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 Rural Affairs

(웹주소) <https://www.gov.uk/guidance/how-to-comply-with-reach-chemical-regulations>

2 EU REACH 규정 주요 내용

- 영국을 포함한 EU국가들은 유럽화학물질청(ECHA)주관의 EU 법률 프레임 워크를 통해 화학물질을 규제하며, 입법의 주요 내용은 REACH (화학물질 등록, 평가, 허가의 제한)임
- EU 시장 출시 전 ECHA 에 화학 물질을 등록하고 유일대리인(OR: Only Representative)을 확보하여 REACH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유일 대리인(Only Representative)은 유럽경제지역(EEA)에 기반을 두고 REACH를 준수하기 위해 수입업자의 임무와 책임을 수행하는 대리인의 역할을 함

3 노딜 브렉시트 발생시 주요 변경사항

- ※ 영국 정부 및 영국 보건당국(HSE, The health and safety executive)이 화학물질 규제(REACH)관련으로 발표한 가이드언스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였으므로 상세한 내용은 관련 가이드언스 참고가 필요

● 영국 및 EU 수출시 변경사항 및 주의사항

- 노딜 전은 영국 및 EU 동일한 EU REACH 규정 적용
- 노딜 후 영국 보건당국 HSE는 각 대상 별로 대응 방안을 발표

● 영국 기반 등록자 (UK Based REACH Registrant)

대상	해야 할 일	기한
영국 시장 진출	1. 영국 REACH IT 시스템 계정 개설 2. 영국 REACH IT 에 기초 정보 입력 3. 영국 REACH 요구에 따라 기술정보 제공	2. 탈퇴일로부터 120일 이내 3. 탈퇴일로부터 2년 이내
EU/ EEA 시장 진출	영국등록을 EEA기반 기관으로 양도 (예, 계열사 또는 유일 대리인) 영국또는 EEA기반 수입업자가 EU REACH에 적합성을 준수하도록 지원	탈퇴일 탈퇴일

● 영국 사용자 및 EU REACH 등록 화학물질 유통업체

대상	해야 할 일	기한
영국 기반 기관에서 혼합물을 조달 받음	별도 조치 불필요	해당 없음
EU/ EEA 기반 기관에서 혼합물을 조달 받음	HSE에 다음 사항 통지 필요 1. 영국 REACH IT 시스템 계정 개설 2. 영국 REACH IT 에 기초 정보 입력 3. 영국 REACH 요구에 따라 필요한 기술정보를 제공하여 HSE에 물질 등록 또는 EU/EEA 공급업체가 영국 기반 유일 대리인을 임명 하도록 장려 또는 영국 등록 공급 업체로 조달처 변경	2. 탈퇴일로부터 180일 이내 3. 탈퇴일로부터 2년 이내

● 영국 기반 REACH 인증 보유자 (UK Based REACH Authorization Holder)

대상	해야 할 일	기한
영국에서 사용 또는 공급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인증과 관련된 기술정보를 HSE에 제공	탈퇴 후 60일 이내

● EU/EEA 기반 회사가 보유한 REACH 인증 제품을 쓰는 영국 사용자 (UK downstream users of a REACH authorisation held by an EU/EEA-based company)

대상	해야 할 일	기한
영국에서 사용 또는 공급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1. 기존 공인 DU(판매자)인지 확인 2. HSE에 다음 사항을 통지하십시오. - 기존 EU 인증; - 기존 EU 승인에 명시된 조건; - 물질 공급 업체의 정체성	탈퇴 후 60일 이내

● 등록 또는 승인 신청에 대한 ECHA 또는 EU 위원회 결정 대기 중

대상	해야 할 일	기한
등록을 위한 ECHA 결정 대기	등록 서류를 영국 REACH 기관 (HSE)에 다시 제출	제품 시장 출시 전
ECHA가 최종 의견을 채택한 승인 신청서	1. 국무 장관에게 신청서를 통지 2. 국무 장관에게 신청서 사본, 신청서에 포함된 정보 및 신청자가 ECHA의 의견 구성에 중요한 승인을 위해 ECHA에 제공 한 기타 정보를 제공 3. 국무 장관에게 ECHA가 신청자에게 보낸 의견의 사본을 제공	탈퇴일로부터 180일 이내
ECHA가 최종 의견을 채택하지 않은 승인 신청서	영국 지원자 인 경우 지원서를 영국 REACH 기관 (HSE)에 다시 제출 EU / EEA 기반 공급 업체에서 신청한 승인은 영국 REACH 승인을 새로 신청해야 함	탈퇴일로부터 180일 이내

1 개요

● 목적

- 영국 정부는 노딜 브렉시트 발생시, 영국시장에 진입하는 제품을 위해 사용될 영국의 새로운 제품 마크로 ‘UKCA 마크’를 사용할 것임을 발표함에 따라, 관련 가이드نس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자 함
- 노딜 브렉시트 후에도 영국 시장에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대부분의 경우, 규제요건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CE 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일부 상품의 경우 UKCA 마크를 적용해야 함

● 출처 : 영국 정부 사업에너지 산업정책부 가이드نس

(영문) Using the UKCA marking if the UK leaves the EU without a deal

(국문) 노딜 브렉시트 발생 시, UKCA 마크 사용

(발표한 부처명)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

(웹주소)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prepare-to-use-the-ukca-mark-after-brexite/using-the-ukca-marking-if-the-uk-leaves-the-eu-without-a-deal>

2 UKCA 마크 사용

- **적용 대상 품목:** 현재 CE마크가 적용되는 대부분의 제품은 새로운 UKCA 마크 적용 대상임
- **마크 사용 규정:** CE 마크의 규정을 동일하게 반영
 - ① 노딜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 시장에 진입하는 제품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대부분의 경우, CE 마크 사용이 가능
 - ② 노딜 브렉시트 이후, 제3자 적합성평가를 영국 적합성평가기관에서 수행할 경우에는 UKCA 마크를 적용해야 함
 - ③ 자기선언(self-declaration)에 따라 CE 마크를 표시하는 제품은 노딜 이후에 UKCA마크를 사용할 수 있음. 단, UKCA 마크는 EU 시장에서 인정되지 않음

3 UKCA 마크 표시 규칙

- 제품 자체에 UKCA 표시 부착 필요, 부득이한 경우 포장이나 설명서 등에 부착할 수 있음
- 표시 규칙이 제품에 따라 다르나, 기본적으로 다음의 일반적인 규정이 적용됨
 - UKCA 마크는 제품의 제조사나 공인 대리인이 제품에 부착해야 함
 - UKCA 마크를 하는 경우 법규 요구사항에 제품이 적합한지에 대해 책임짐을 의미

- 제품이 UK 법령에 적합함을 보여주기 위해 오직 UKCA 마크만 사용해야 함
- 제3자에게 UKCA 마크의 의미나 형태를 잘못 해석할 수 있는 다른 마크나 사인 부착 불가
-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는 경우 UKCA 마크 제품 부착 불가
- UKCA 이미지 사용 규칙은 제품에 관한 법령의 세부사항에 따라 다르나 기본적으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함
 - 마크의 크기를 줄이거나 늘리면 UKCA 문자 크기도 아래 기준에 비례하여 조정
 - 제품관련 법에 최소 수치 명시가 없으면 UKCA 표시는 최소 5mm 이상이어야 함
 - UKCA 표시는 쉽게 눈에 띄어야 하고 읽기 쉽고 지워지지 않는 영구적이어야 함

[그림. 표준 UKCA 마크 양식]



4 UKCA 마크 기타 요구사항

- 기술문서 (Technical Documentation) 보유
 - 제조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제품이 법정 요구 사항을 준수 함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보관해야 함. 이는 시장 감시시 정부 당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최대 10년까지 보관해야 함
 - 보관해야 하는 정보는 법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아래가 요구됨
 - 제품 설계 및 제조 방법
 - 제품이 관련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방법
 - 제조자 주소 및 보관 시설
- 영국 적합성 선언서 (UK Declaration of Conformity) 보유
 - UK DoC는 합법적으로 UKCA 마크가 있는 제품에 동반해야 하는 문서이며 제조자 또는 공인 대리인은 다음을 수행해야 함
 - 제품이 해당 제품에 적용되는 관련 법규 요구사항을 준수함을 선언
 - 적합성 선언서에 해당 제품, 적합성 평가기관(해당되는 경우)정보, 제조자 또는 공인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야 함

1 개요

● 목적

- 영국정부는 노딜 브렉시트 발생시, 영국과 EU 시장에 제품 판매를 위한 대리인 (authorized representatives 또는 responsible persons) 임명 요건에 관한 변경 사항을 발표하여, 관련 가이드언스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자 함
- 본 가이드언스에서는 일반적인 대리인을 포함하나 아래 대리인은 포함하지 아니함을 안내함
 - 의약품에 대한 약물감시 (QP, QPPV)를 담당하는 공인 전문가
 - 화학 물질에 대한 유일 대리인
 - 의료기기에 대한 공인 대리인

- 출처 : 영국 정부 사업에너지 산업정책부 가이드언스로 기존에 공표했던 가이드언스를 철회하고 기 발표된 영국에 제조상품 출시 가이드언스와 EU에 제조상품 출시 가이드언스에 각각 관련 내용을 통합하여 개정함

(영문) Appointing nominated persons to your business if there's no Brexit deal

(국문) 노딜 브렉시트 발생 시, 영국에 제조상품 출시 / EU에 제조상품 출시

(발표한 부처명)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

(웹주소) <https://www.gov.uk/guidance/placing-manufactured-goods-on-the-uk-market-if-there-is-no-brexit-deal#non-harmonised-go>

<https://www.gov.uk/guidance/placing-manufactured-goods-on-the-eu-internal-market-if-there-is-no-deal>

2 노딜 시 영국 법적 대리인 임명 변경

- 일반적인 경우에 아래와 같이 대리인 임명 요건이 노딜 이후 변경되며 화장품, 의료기기 등 특정 제품은 별도의 규정이 적용됨

구분	노딜 전	노딜 후
일반요건	영국 및 EU 소재 대리인 자격 동등 ▶ 기업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적합성 선언서와 제품 기술 문서를 보유하고 이를 EU 감독 기관에 제출하여 제조자를 대신 해 제품의	① 영국에서 공인받은 대리인은 더 이상 EU 법에 의해 인정되지 않음 ▶ EU 시장 판매시 해당 대리인 유지 불가 ② 영국은 노딜 이후에도 기존에 등록된 EU, EEA 기반 대리인을 계속 인정함.

구분	노딜 전	노딜 후
	안전성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진다. ※ 대부분의 대리인 지명은 선택이나, 다음 2가지 경우는 필수임 ▶ 제조업체가 EU 국가에 있지 않은 일부 제품 (예 : 의료 기기 및 해양 장비) ▶ 화장품의 경우 : 비 EU 제조자는 제품의 안전 보장과 같이 정해진 의무 사항을 수행할 EU 역내 책임자를 지명 해야함	그러나 노딜 이후 신규 대리인을 지명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영국 기반 대리인을 지명해야 함
영국소재 대리인	EU 대리인 가능	EU 대리인 불가 영국 대리인 가능
EU 소재 대리인	EU 대리인 가능	EU 대리인 가능 영국 대리인 가능
화장품 분야 예외 (EC1223/2009)	EU 역외 제조자는 EU 역내 대리인 지명 필수	영국 시장 판매시 EU 대리인 불가 ▶ 영국 소재 대리인 지명 EU 판매시 영국 대리인 불가 ▶ EU 소재 대리인 지명

1. 제품 안전 분야 법령 변경에 대한 안내서 발간

- 브렉시트 대응을 위한 기업 공식 대응방안이 담긴 “UK Product Safety and Metrology Guidance in a ‘no deal’ scenario- 노딜인 경우 영국 제품안전 및 계량분야 안내서”를 정부주관으로 발간

UK Product Safety and Metrology Guidance in a ‘no deal’ scenario

본 문서는 영국이 EU를 노딜로 탈퇴하는 경우에 탈퇴일부터 적용되는 가이드스임

- 영국의 EU 탈퇴시 EU(철회) 법 2018이 효력이 발휘되고 EU는 EU 규정을 유지한 상태에서 영국은 자국법에 따라 제품안전 및 계량제도를 운영하게 됨
- 「제품안전과 계량 (수정안) (EU탈퇴) 규정 2019」은 영국이 노딜 시나리오인 경우 영국의 EU탈퇴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는 것으로 영국의 협상없이 EU를 떠날 경우 영국 시장을 위한 특정 조항을 만든 것임. 즉, EU의 제품안전과 계량과 관련된 영국의 법률 사항을 영국 자체의 법률로 변경하기 위해 급변 수정안을 마련하여 의회 승인을 진행 중임

< 중요 사항 >

1. 영국 의회는 영국 법규와 영국 법에 통합된 EU 법으로 영국이 협상없이 EU를 떠날 때 적용되지 않을 상의 법조항만 변경함. 이를 통해 영국의 규제시장 창출
2. 안전 및 기타 기술적 요구사항은 변경되지 않음
3. 영국이 EU 탈퇴전에 EU 시장에 합법적으로 배치 된 물품은 영국에서 계속 유통될 수 있음

4. 합법적으로 CE마크가 표시된 제품은 정해진 기간 동안 영국에서 계속 수용될 것임
5. 영국이 EU를 떠난 이후 처음으로 영국 시장에 출시되는 제품은 기술요구사항은 현재와 동일하나 라벨링 또는 통지(Notification) 요구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
6. 영국 시장에 출시 할 제품에 사용될 수 있는 새로운 UK 적합성평가표시 (“UKCA”)를 도입함. 기존의 모든 운영중인 영국 공인 기관은 승인기관으로 변경됨. UK 기반 승인 기관이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UKCA 표시를 사용해야 함. 독립된 제3자 적합성 평가가 필요한 EU로 수출되는 제품의 경우, 평가는 반드시 EU 기반의 인증 기관이 수행해야 하며, 평가가 완료된 제품은 반드시 ‘CE’로 표시해야 함 (해당되는 경우)
7. 영국은 제조사와 수입자가 합법적으로 CE표시를 한 제품을 영국 시장에 배치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EU 공인 기관 적합성 평가를 계속 인정함
8. 영국은 공통규제와 동일한 역할을 하고 법적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추정할 수 있는 지정된 규격 목록을 게시할 예정임. 탈퇴 당일, 지정된 규격은 조화 표준과 동일한 것임
9. 영국이 EU를 떠날 때, 제조자의 역할과 책임은 변경되지 않을 것임. 그러나 EEA 회원국에서 영국으로 제품을 가져오고 탈퇴일 이전에 “유통 업체”였던 일부 영국 업체는 제품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향상된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것을 포함하여 새로운 법적 의무를 갖는 “수입업자”로 전환됨. 이 “새로운” 수입자는 18개월이라는 전환기간 동안 제품과 함께 제공되는 문서에 주소 등의 세부사항을 기재해야 함. 화장품 제품은 영국이 EU 탈퇴 후 2년 동안 영국 시장에 허용될 예정이며 포장 또는 용기에 EU 책임자의 정보를 기재해야 함. 이후에는 영국 책임자의 이름과 주소를 용기나 표장에 명시해야 함.

2. 사업체에서 해야 하는 변경사항

1) 주의: 주요 변경사항

- 제품 안전 환경은 크게 변함이 없을 것이며, 개정 법안의 목적은 영국이 EU를 떠남에 따라 영국 시장이 EU 규정을 대체할 프레임워크를 만들기 위함임. 따라서 영국의 EU 탈퇴 전 이미 EU (및 영국) 시장에 합법적으로 배치된 상품은 영국에서 계속 유통 될 것임. EU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 (유럽 연합이 인정 한 적합성 평가기관이 CE마크 인증 또는 시험한 제품 포함)은 영국이 EU를 탈퇴한 후에도 계속 영국 시장에 일정 기간동안 출시될 수 있음. 이 기간은 향후 협의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기간에 대한 추가 입법이 필요할 것임.
- 동 변경사항은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날부터 발효될 것임

2) 제품 라벨수정 확인

- UKCA (UK Conformity Assessed) 마킹은 새로운 영국 적합성 마크임. 영국 시장에 출시된 제품에 대한 영국 적합성 표시는 영국 시장에 출시되는 제품의 CE마크를 대신하지만, EU 법률 및 제품에 따라 준수 여부가 결정됨
- CE 마킹 외에도, 영국은 일시적으로 기타의 적합성 마크를 인정하며, 그 예로 에어로졸 제품에 대한 엡실론 마크, 컨테이너 측정 마크 등이 있음. 영국은 포장된 상품에 대한 수량 관리의 평균 시스템 준수를 위해 자발적인 e-mark를 사용할 것임

3) 신제품 영국승인 방법 확인

- UK 승인기관 (Approved Bodies- 이전의 Notified Bodies)를 통해 승인 획득 가능. 영국은 일정 기간 동안 EU 공인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인정함. 기존의 유럽 공통표준은 영국의 지정표준이 되어 영국 필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데 사용 가능함.

4) EU/EEA 물품 반입시 영국의 수입업자 확인 필요

- EU 및 EEA 국가에서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제품에 라벨이 안전하고 올바르게 부착되어 있는지에 대해 책임지기 위해 귀사 사업체가 수입자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탈퇴 전에는 만약 사업체가 영국에서 독일에서 오는 제품을 공급하는 소매업자였다면 EU 단일시장의 distributor(판매자)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탈퇴 후에는 importer (수입업자)로 형태가 전환될 것임.

- EU 탈퇴 후 EU에서 포장된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영국의 수입자로 간주되어 해당 제품의 수량에 대한 책임이 부과됨. 포장된 제품의 수량과 수입자로서 주소 및 이름을 라벨에 대한 책임을 지기위해 관련 자료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포장된 물품에 대한 영국 수입자의 이름과 주소 기재 의무는 탈퇴일로부터 18개월간은 의무적용이 아닌 유예기간이 부여됨

5) 영국에서 화장품을 제조, 수입, 유통하는 경우

- 해당 업체는 영국이 EU 탈퇴 시 “책임자(Responsible Person)” 로 지정됨. 즉, 영국 시장에 배치되는 화장품 제품에 대한 특정 정보(제품이 인체 건강에 안전하다는 것과 같은 책임자로서의 의무를 포함)를 영국에 통보해야 함. 신규 화장품 DB구축 예정이므로 업로드 할 데이터를 준비해야 함. 화장품은 영국에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책임자를 두도록 의무화함. EU DB 접근 및 위원회(Commission) 통보는 영국에서는 더 이상 의무가 아니지만 신규 구축되는 영국 DB 및 국무부에 요건사항을 통보하는 의무가 부과됨

3. 변경되는 개별 법령

- 제품 안전 및 계량측정(개정 등)(EU탈퇴) 규정 2019는 36개의 관련 제품안전 및 계량측정 법안을 개정하게 됨. 2019 규정에 대한 세부 내용들은 아래 법령을 포함하여 관련 법령들의 변경이 요구된다. 다만, 보건안전국(Health and Safety Executive)의 법안 7, 10, 16, 18과 사법부 및 북아일랜드 관할 30, 31, 32는 포함되지 않음

순번	명칭
1	Schedule 1: Hallmarking Act 1973 홀마킹 법 1973
2	Schedule 2: Weights and Measures Act 1985 무게 및 측정법 1985
3	Schedule 3: Consumer Protection Act 1987 소비자 보호법 1987
4	Schedule 4: Amendment of the Measuring Container Bottles (EEC requirements) Regulation 1977 밀폐된 병 측정의 수정(EEC 요건)규정 1977
5	Schedule 5: Measuring Instruments (EEC Requirements) Regulations 1988 측정 기기 (EEC 요건) 규정 1988
6	Schedule 6: Weights and Measures (Intoxicating Liquor) Order 1988

순번	명칭
	무게와 측정 (중독성 주류) 명령 1988
7	Schedule 8: Noise Emission in the Environment by Equipment for use Outdoors Regulations 2001 외부에서 사용되는 기기에 의한 환경소음 발생 규정 2001
8	Schedule 9: General Product Safety Regulations 2005 일반 제품 안전 규정 2005
9	Schedule 11: Weights and Measures (Packaged Goods) Regulations 2006 무게와 측정 (포장된 제품) 규정 2006
10	Schedule 12: Supply of Machinery (Safety) Regulations 2008 기계류 공급 (안전) 규정 2008
11	Schedule 13: Aerosol Dispensers Regulations 2009 에어로졸 디스펜서 규정 2009
12	Schedule 14: Accreditation Regulations 2009 인가 규정 2009
13	Schedule 15: The Toys (Safety) Regulations 2011 장난감 안전 규정 2011
14	Schedule 17: Weights and Measures (Revocations) Regulations 2015 무게와 측정 철회 규정 2015
15	Schedule 19: Pyrotechnic Articles (Safety) Regulations 2015 폭약 규약 안전 규정 2015
16	Schedule 20: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Regulations 2016 전자기 적합성 규정 2016
17	Schedule 21: Simple Pressure Vessels (Safety) Regulations 2016 단순 압력 용기 안전 규정 2016
18	Schedule 22: Lifts Regulations 2016 승강기 규정 2016
19	Schedule 23: Electrical Equipment (Safety) Regulations 2016 전기기기 안전 규정 2016
20	Schedule 24: Pressure Equipment (Safety) Regulations 2016 압력 기기 안전 규정 2016
21	Schedule 25: Equipment and Protective Systems Intended for Use in Potentially Explosive Atmospheres Regulations 2017 잠재적 폭발환경에서 사용되는 기기와 안전 시스템 규정 2017
22	Schedule 26: Non-automatic Weighing Instruments Regulations 2016 비자동 저울 기기 규정 2016
23	Schedule 27: Measuring Instruments Regulations 2016 측정 기기 규정 2016
24	Schedule 28: Recreational Craft Regulations 2017 레크레이션용 선박 규정 2017
25	Schedule 29: Radio Equipment Regulations 2017 무선기기 규정 2017
26	Schedule 33: Amendment of Regulation (EC) No 765/2008 on accreditation and market surveillance relating to the marketing of products 제품의 마케팅과 관련된 인가와 시장감시 수정 규정 EC No 756/2008
27	Schedule 34: Regulation (EU) 2009/1223 on the safety of cosmetic products and the Cosmetic Products Enforcement Regulations 2013

순번	명칭
	화장품 제품 안전에 관한 EU 2009/1223 규정과 화장품 제품 시행규정 2013
28	Schedule 35: Regulation (EU) 2016/425 on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and th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Enforcement) Regulations 2018 개인 보호 기기에 관한 EU 2016/425 규정과 개인용 보호 기기 시행규정 2018
29	Schedule 36: Regulation (EU) 2016/426 on gas appliances and the Gas Appliances (Enforcement) and Miscellaneous Amendments Regulations 2018 가스기기에 관한 EU 2016/426 규정 및 가스기기 시행과 기타 수정규정 2018